

대법원 2018. 3. 29 선고 2017다5324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8. 3. 29 선고 2017다53241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1. 17 선고 2017나49302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7. 5 선고 2016가소452201 판결

전문

원고, 상고인A

피고, 피상고인B

판결 선고 2018. 3. 29.

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1. 17. 선고 2017나49302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,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조재연

대법관고영한

주심대법관김소영

대법관권순일